

운영규정 개요

1. 기본정보

기관명	풍성한방문요양센터	대 표	최한나
설치일자	2008년 07월 25일	급여종류	재가 급여:방문요양
소재지	경기도양주시 평화로1429번길 168	팩스	031-864-9192
전화	031-864-9191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2.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a. 이용정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은 두지 않는다.
- b. 이용자 모집 방법: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 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대상자 방문 상담.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기간	1.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이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1.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 하였을 때 2.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 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4.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5.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1.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배상책임보험	1.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4.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상

운영 규정 참조-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